

도민이 중심
신뢰받는 의회

2025. 3. 13.(목)
제 4 2 4 회 임 시 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충청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의회
산 업 경 제 위 원 회

충청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이옥규 의원 등 8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25년 3월 4일

나. 회부일자 : 2025년 3월 5일

3. 개정이유

조례의 입법취지를 반영하여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를 산업안전보건 법에 따라 명확히 하고,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포함 내용을 구분하여 충청북도가 효율적으로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조례의 입법취지를 반영한 목적 조항 자구 수정(안 제1조)
- 조례에 사용하는 정의 규정 정비(안 제2조)
-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 포함 사항 정비 및 시행계획 포함 사항 신설
(안 제6조)

5. 검토의견 (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종섭)

가. 발의배경

- 조례의 제명과 취지가 정확하게 나타날 수 있는 목적 조항의 개선이 필요함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도민들이 알기 쉽도록 명확하게 정비해야 함
- 충청북도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과 매년 수립·시행하는 시행계획에 포함할 사항에 대한 구분과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조례의 근거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과 관련한 필요한 조치와 이를 위한 조례 제정의 명시적 규정을 반영하여 용어 정비 등 법령과 조례의 체계정합성을 갖추고 노동안전보건 기본·시행계획의 효율적 운용 필요가 있어 조례의 개정을 추진함

나. 개정안의 주요 조항에 대한 의견

- 안 제1조는 목적 조항으로 제명 및 조례의 취지와 일치하도록 “노동안전보건 강화”를 “노동안전보건 지원”정비하는 등 목적을 명확하게 표현한 것으로 특별한 법률적 문제는 없음
- 안 제2조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노동안전보건”, “사업주”에 대한 정의를 알기 쉽고 간단명료하게 정비하는 것으로

해당 조문의 개정은 타당함

- 안 제6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시행하는 바,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안 제6조 제3항의 매년 수립·시행하는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구분하여 새롭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6조 제4항에서 매년 수립·시행하는 시행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년도 사업 시행 결과를 분석하여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한 것으로 개정이 타당함

다. 상위법령 등 검토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명시하고 있음
- 같은 법 제4조의3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제3항에서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근거를 명시하고 있음
- 근거 법령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라. 종합의견

- (필요성) 본 조례의 개정은 조례의 목적에 제명 및 조례의 취지를 반영,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알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정비,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구분하여 새롭게 정비, 매년 수립·시행하는 시행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년도 사업 시행 결과를 분석하여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한 것으로 조례의 예측가능성과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한 것으로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 (타당성) 본 조례에서는 근거 법령에 맞게 용어 정의 및 체계를 정비하고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적절히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법적합성) 관련 법령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문 체계와 구성 등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음
- (종합의견) 기존 조례의 개정을 통해 충청북도의 노동안전 보건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의 일관성 효율성을 확보할 것으로 판단되며, 필요성, 타당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조례의 개정은 적절함
다만,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하는 전년도 사업시행 결과에 대한 평가·분석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